

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52호
- 나. 제출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5. 1. 23.
- 라. 회부일자 : 2025. 1. 23.

## 2. 제안이유

일·가정 양립, 일·생활 균형의 근로문화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하는 근무형태에 맞추어 지원금액을 다양화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정규직 정의 정비(안 제2조제5호)
- 나. 주민고용보조금 지원금액의 다양화를 위해 “월50만원”을 “월50만원 이내”로 변경(안 제7조제1항)

## 4.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6조, 제50조

##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실제 현장의 정규직 근로자의 다양한 근무 시간과 근로형태를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무자를 채용할 경우에도 일정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제4호 중 “기업에게”를 “기업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을 “보장되는”으로 개정하고

### '-에'와 '-에게'의 차이점에 대한 어문규정 설명

1. '-에' ⇨ 처소, 시간, 방향, 목적 등을 나타내는 격 조사임.

- \* 처소 : 어떤 장소나 위치를 나타냅니다. (예: 학교에 간다, 책상 위에 있다)
- \* 시간 : 어떤 시간이나 시점을 나타냅니다. (예: 아침에 일어난다, 10시에 만나다)
- \* 방향 : 어떤 방향이나 목표를 나타냅니다. (예: 서울에 간다, 성공에 도전한다)
- \* 목적 : 어떤 목적이나 이유를 나타냅니다. (예: 공부에 집중한다, 건강에 좋다)

2. '-에게' ⇨ 수여격 조사임.

- \* 대상 : 어떤 대상에게 향하는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냄. (예: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린다)

정규직(기간을 정하지 아닌한 것)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각 기업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음.

○ 안 제2조 관련(정규직 정의 정비)

구 분	현행 조례	개정 후
제2조 제5호	5. “정규직”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이 <b>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b> 직위나 직무를 말한다.	5. “정규직”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이 <b>보장되는</b> 직위나 직무를 말한다.

- 안 제7조제1항 중 “기업에게”를 “기업에”로, “월50만원”을 “월50만원 이내”로 함.

○ 안 제7조 관련(지원금액 조정)

구 분	현행 조례	개정 후
제7조	7. 구청장은 금천구 주민을 고용한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5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다.	7. 구청장은 금천구 주민을 고용한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50만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일자리 유관기관 업무 회의 및 설문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단시간 근무자(예시 주30시간 근무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
-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조례는 없으나,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조례를 근거로 고용보조금 유사 지원금을 지원하는 구는 도봉구, 동작구 2개 자치구가 있음.

자치구	사업명	추진근거	2024년 예산
동작구 (일자리정책과)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 *2024년 첫 시행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 3인 이상 중소기업 36,12개월 분할지급 총 510만원 최대 2인 3개월 후 90만원 6개월 후 120만원 12개월 후 300만원	153,000천원 *24년도 예산 70% 이월
도봉구 (지역경제과)	희망장려금 *2022년 첫 시행	「도봉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1인당 50만원 6개월, 최대 2인	75,000천원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 기업 지원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상시고용인원 3명 초과 기업 월 최저임금의 50% 이하 지원	310,000천원

-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사업 현황 1부. 끝.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5호, 2024. 1. 9., 일부개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4. 1. 9.>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

## 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률 제8372호(2007. 4. 11.)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조례 제·개정 이력**

○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제정** : 2015. 2. 27.

- **제정사유** : 중장년층 금천구 주민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경영지원,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영 근거 마련

- **1차개정** : 2023. 12. 29.

- 만36세이상 중장년층 →15세 이상인 사람
-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3명 이상 중소기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우리구 주민고용보조금 운영**

구 분	사 업 명	예 산	근 거
2011년	주민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	90,000천원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 14조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2012년	- 3인이상 300명 미만 중소기업	150,000천원	
2013년	- 36세이상 정규직 신규 채용시	150,000천원	
2014년	- 1인당 50만원, 6개월	60,000천원	
2015년	- 1개 기업당 2~3명 이내	30,000천원	
2023년	<b>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사업</b> - 36세 이상 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3인이상) - 1인당 50만원, 6개월 - 1개 기업당 2명까지	92,800천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24년	<b>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사업</b> -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 - 1인당 50만원, 6개월 - 1개 기업당 2명까지	122,200천원	

○ (2023년 추진실적) 17개 기업 20명 지급

- 예산 92,800천원 중 32,500천원 사용 (2023년 예산 집행률 36%)
- 예산 부진 사유
  - 지원 대상 근로자 나이(36세이상) 및 대상기업 근로자수(3인 이상) 제한으로 적합한 기업이 적고 하반기 사업시작으로 추진실적이 부진함

○ (2024년 개선사항) 조례 일부개정

- 대상기업 및 대상자 확대를 위해 조례 일부 개정

구분		2023년	2024년	비고
조례 개정	대상자 나이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36세 이상의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미취업자	주민등록상 나이가 15세 이상인 사람	근로기준법 제64조 준용
	대상기업 규모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중소기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제도 개선	업종확대	학원 및 숙박음식 업종	지원 가능	

○ (완료상황) 2024년 30개사 34명 지원 (2024년 예산 집행률 95%)

- 지원 기업 및 대상자 확대로 2024년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

최근 2년간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실적

(기준일 : 2024. 12. 31.)

구분	지급기업 (근로자)	예산액 (천원)	사용예산 (천원)	예산잔액 (천원)	예산 집행률	비고
2023년	17개사 (20명)	92,800	32,500	57,700	36%	
2024년	30개사 (34명)	122,200	116,500	6,500	95%	사용예산 중 '23년 접수기업 포함 (24,500천원)